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8. February _ Vol. 76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NEWS 식품안전 주요 NEWS

프랜차이즈외식업체 사용 식재료제조업체 점검 결과

- 73곳점검 결과 11곳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내용	행정제재	벌칙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표시 축산물 사용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전부미실시 : 품목제조정지 1개월 50%이상 미실시 : 품목제조정지 15일 50%미만 미실시 : 시정명령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과태료200만원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7일)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세스코 식품안전Zone
1588-1119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3,021가지의
도달 식품위생 솔루션

세스코 식품안전감사 서비스

[P1] 식품위생진단
“약속된 기준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

[P2] 식품안전진단
“실행해야 할 기준이 적정하고 실행이 양호한지”
평가&진단

내 사업장 식품안전 체계의 새로운 변화!!



고객 니즈에 맞춘 식품안전감사 제공

- 업종 특성, 글로벌 위생관리기준 접목
- HACCP컨설팅 know-how 접목
- Data 기반의 객관적 자료, 문제 발생 사전예방 가능



해충방제+Food 복합서비스로 시너지 효과

- 시설+설비 2개 관점 진단 ▶ 이물 관리 특화
- ▶ 이물 클레임 예방

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195곳 적발

- 연휴전까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총력 다할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 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영업정지 15일 전부미실시 : 품목제조정지 1개월 50%이상 미실시 : 품목제조정지 15일 50%미만 미실시 :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강진단 미 실시,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6일)

🔍 정책 / 법령 정보

한-EU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기간 연장

- 양국간 별도 협의 시까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대한민국과 EU 간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발효일로부터 3년"에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2018년 2월 1일 이후에도 한국과 EU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EU
2. 인정 범위 : 1) 한국(또는 EU)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2) 가공식품의 범위는 식품공전상 분류기준 적용, 3)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3. 동등성 인정 유효기간: (기존) 2018.1.31 (변경) 양국 간 별도 협의의 시까지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원, 1월 31일)

세스코 표시 검증/작성 서비스



‘표시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

- 최신 정책, 법령 관리 통한 최적의 ‘제품 표시’ 유지
- 잦은 인력 변화에 따른 법규 리스크 관리 역량 유지
- 명확한 원인 파악을 통한 대응논리 및 소명절차 지원
- 전문교육, 영양성분 분석까지 ‘One-stop’ 서비스 연계

【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솔루션 제공

【 현장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현장방문, MD당 20제품

【 표시 작성 】

- 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작성 및 솔루션 제공

【 Online/광고물 검증 】

- 셀링포인트/체험기/댓글 등 허위,과대 광고 검증

제품 출시 이전부터 이후까지 모든 표시 관련 법규 기반의 체계적인 제품표시 리스크 관리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 필요

- 하루 2~4잔 이상 섭취 시 1일 최대 섭취 권고량 초과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15개) 및 편의점(5개)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불면증·신경과민·심장박동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나 함량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최대섭취량(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mg 이하)을 권고하고 있다.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아메리카노(20개)와 콜드브루 커피(13개)의 ml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mg, 0.89mg으로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했다. 특히, 한 잔(CUP)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mg(최소 75mg~최대 202mg), 212mg(최소 116mg~최대 404mg)으로 커피음료(1캔(병), 88.4mg)·에너지음료(1캔, 58.1mg)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으며,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권고량(성인 400mg 이하)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도 카페인(25mg)이 검출되었다.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라 오인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콜드브루 커피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2월 6일)

냉동만두 섭취 시 포화지방, 나트륨 주의!

- 일부 제품, 영양성분 실제 함량이 표시기준에서 허용오차범위 넘어

소비자시민모임은 냉동만두에 대한 합리적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17개 냉동만두의 영양성분, 표시사항 및 안전성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등의 영양성분 실제 함량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했다. 냉동만두 17개 제품의 200g당(만두 5~6개)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6.53g으로 1일 영양성분기준치(15g)의 44%, 평균 나트륨 함량은 658.48mg으로 1일 영양성분기준치(2,000mg)의 33% 수준이었다. 특히,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상위 6개 제품은 200g당 포화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0~61%에 달했다. 17개 제품별 200g당 나트륨 함량은 488.51~768.17 mg(최대 1.6배), 포화지방 함량은 3.80~9.20 g(최대 2.4배), 당류 함량은 2.21~9.61 g(최대 4.3배)으로 나타났으며, 만두 종류별 비교결과 나트륨 함량은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포화지방 함량은 고기만두, 당류 함량은 갈비만두가 높았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보다 많은 양의 냉동만두를 섭취하거나 만둣국 등의 요리로 먹는 경우 더 많은 포화지방 및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하루 영양성분기준치를 고려한 섭취량 조절 및 조리방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출처 : 소비자시민모임, 2월 6일)



세스코 시험분석 서비스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HACCP 위해요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100호(식품), 제59호(축산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 서비스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



첨단 분석장비 및 전문인력과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보증 하는 국가공인검사기관

△ 주요 단속 정보

'18년 2~3월 점검 일정

점검명	점검 대상	점검기간
○ 발렌타인 데이 대비 점검	초콜릿, 과자류(캔디류) 등 제조/소분/판매 업체	2.5 ~ 2.9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	인터넷 등 판매 제품	2.7 ~ 2.9
○ 영유아식 표방(표시, 광고) 점검	이유식, 영유아곡류조제식 등	2.19 ~ 2.21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절임배추, 꽃감, 과메기, 멸치 등	2.22 ~ 2.28
○ 봄 신학기 합동점검	학교급식, 매점, 집단급식소식품/대형식재료 판매업체, 분식점 등	3.2 ~ 3.12
○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업체 점검	과자류, 김치류 등 식품제조 / 인삼, 비타민 등 건식식품제조(1차)	3.5 ~ 3.9
○ 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조리.판매	3.19 ~ 3.2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 NEWS

농림축산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개집에는 원료 단계의 제도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판매 단계의 주요 제도도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산란계 신규 농장에 새로운 사육밀도 기준 적용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신규 실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중소 식품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식품명인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외식 창업.경영 역량강화 지원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 1. 농가소득 증대사업(농업소득보조금) 신청 기한
 - 2. 농가소득 증대사업(농업소득보조금) 신청 기한
 - 3. 농가소득 증대사업(농업소득보조금) 신청 기한
 - 4. 농가소득 증대사업(농업소득보조금) 신청 기한
 - 5. 농가소득 증대사업(농업소득보조금) 신청 기한
 - 6. 농가소득 증대사업(농업소득보조금) 신청 기한
 - 7. 농가소득 증대사업(농업소득보조금) 신청 기한
 - 8. 농가소득 증대사업(농업소득보조금) 신청 기한
 - 9. 농가소득 증대사업(농업소득보조금) 신청 기한
 - 10. 농가소득 증대사업(농업소득보조금) 신청 기한
-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규사업
 - 11.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규사업(농산물품질관리원)
 - 12.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규사업(농산물품질관리원)
 - 13.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규사업(농산물품질관리원)
 - 14.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규사업(농산물품질관리원)
 - 15.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규사업(농산물품질관리원)
 - 16.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규사업(농산물품질관리원)
 - 17.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규사업(농산물품질관리원)
 - 18.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규사업(농산물품질관리원)
 - 19.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규사업(농산물품질관리원)
 - 20.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규사업(농산물품질관리원)

눈에 쌓 대진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세스코 식품안전' 사이트([▶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원, 1월 25일)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food.co.kr

HACCP 정기 과정 (2/21, 3/14, 3/26)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2/21, 3/14)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HACCP 팀장 과정 (2/22~23, 3/15~16, 3/29~30)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식품 전문 교육

HACCP 재인증&사후심사 대응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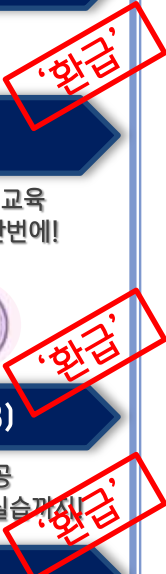
- 재인증/사후심사를 대응하기 위한 주요tip 제공
- 위해요소분석, 검증 중점 이론교육에서 현장 실습까지!

표시연관 법규와 식품표시실습 (3/13)

- 표시 연관 법규를 한눈에 소개(법, 공전, 기타 법규)
- 표시기준을 이해하고 표시 근거와 영양성분표, 표시를 직접! 작성하고 오류사항도 찾아보는 실습을 한번에!

식품공장 해충 방어와 이물분석 (3/27)

- 식품공장 유래 주요 해충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어법 제공
- 주요 이물의 동정방법과 취약포인트 개선방안



'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내용 #2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기본 방향

-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지도·점검
 -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업소, 수출부적합제품(국내 유통 시) 제조·가공업소,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및 제조업체 등 위생관리 강화
 - 식품위생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사후관리 철저
 - 위생관리 자율관리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 위생관리 자율관리업소, HACCP인증업소, 별도의 출입·검사 주기 또는 면제 등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특별관리업체 지정
 - ① 식품위생법을 연 2회 이상, 최근 3년간 5회이상 위반 업체
 - 경미한 위반 사항은 제외(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실시)
 - 식품 등에 이물 혼입으로 위반된 경우 동일 제품에서 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한정
 - ② 사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를 한 업체
 - ③ 위해식품을 성실히 회수하지 않은 업체(회수실적 80%미만)
- 특별관리업체 관리방법
 - 지정일로 3개월 이내에 종전 위반사항 등 특별점검 실시

- 문제 영업자 지정·관리
 - Group 2 분기별, Group 3 반기별 특별 점검하되, 특정시기(명절 등) 특정품목(선물용 제품 등) 집중관리(연중)
 - Group 1은 영업재개 여부 지속 모니터링 후 특별점검

구분	위반내용
Group 1	가. 유독·유해물질 함유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오염
	나. 병든 동물고기 등
	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라. 유독기구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마.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바.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 사용
Group 2	사.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위반조
	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받거나 확인된 후에도 판매
	자.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차. 회수·폐기하지 않고 회수·폐기한 것으로 속임
	카. 식품에 이물(납, 얼음, 한천, 물 등)혼입, 냉동수산물에 얼음막 생성 등 내용량 변조
	타. 사료용, 공업용 비식용 원료를 원료로 사용
Group 3	파. 가족·식육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리는 경우
	가. 부적합 처분되어 반송·반출된 수입식품 등 재수입
	나. 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다.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라. 원산지 둔갑, 함량·등급 기만, 위장 수입·일수 등 부당 이득 목적의 소비자 기만적 행위(연론 보도)된 경우
	가. 유해 화학물질 사용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나. 수입신고 허위서류 제출	
다. 수입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	
라. 품목제조 정지 기간 중 제조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기본 방향

-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취약분야를 선별하여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위반업체 등 문제업체는 지속적으로 반복 지도·점검
- 아산화질소,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의 사용 용도 외 다른 목적(흥미, 재미, 흡입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근절
-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목탄(숯)은 규격품을 사용토록 조치
- 위반이력, 다중이용, 위생취약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 중점 점검 실시
 - 다중이용 :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대형뷔페, 패스트푸드
 - 위생취약 : 배달전문음식점, 제사음식, 장례음식, 애견·동물카페
 - 특정계층 :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키즈카페·룸카페, 보육원, 장애인 복지시설
- 행정사항
 - 위반업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재점검
 - 재 적발 시 특별관리
 - 식품접객업소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위반으로 경찰 등 사법당국 고발

중점 지도·점검사항

- 업태를 위반하여 타 업종의 영업행위 여부
- 음료, 생맥주 등의 공급 배관 위생관리 여부, 세척제 용도별 사용 준수 여부
- 할어 취급 횡집 등 수족관에 허용된 첨가물 외의 물질 사용여부
 - 수족관 차광막 설치 여부, 수족관을 교체 주기(주1회 이상) 및 청결 여부
-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 가격표시 이행 여부
- 액체질소(식품첨가물)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섭취하는 최종 음식에 액체질소가 남아있는지 여부
- 이산화질소를 첨가물 사용 목적(충전, 분사 등) 외 사용 여부
- 숯불구이 음식의 목탄(숯)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하는 규격품을 사용·유도
- 식품첨가물 사용 시, 해당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 정해진 용도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중점 관리
- 액체질소, 빙초산, 드라이아이스 등 접촉 시 위해우려 식품첨가물의 취급주의 집중 점검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비의무 업소는 자율적으로 표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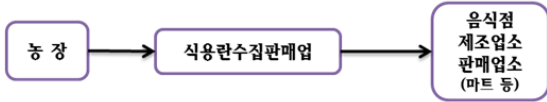
'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내용 #2

축산물 위생감시 중점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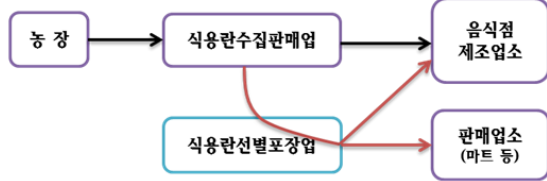
계란(식용란) 안전관리

- 무허가, 신고 영업행위 집중 단속
 -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업종외 영업 행위 단속
 - 관할 내 유통·판매되는 식용란 제품에 표시된 영업자 정보(판매자명 및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상 영업자의 제품 여부 확인
 -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후 계란 유통도

(연행)



(개정)



•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 점검 사항

- 시설기준 준수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 식용란수집판매업 점검 사항

- ① 수집 및 판매, 폐기 기록관리 점검
 - 식용란 거래, 폐기내역서에 식용란의 수집, 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
- ② 판매용 계란 안전관리 점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1.식품원료 기준 1)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위반한 식용에 부적합 알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운반하는 행위
 - 식용란수집판매업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식용란 검사 여부
- ③ 판매용 계란 표시 및 광고 점검
 - 난각표시 및 포장지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돈시키는 제품명 사용 및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 최소 포장단위에 산란일이 동일하지 않은 식용란으로 포장하는 행위

계란(식용란) 안전관리

- 영업자 중점 지도사항
 - 식용으로 판매가 부적합하거나 원료알로 사용이 부적합한 알은 즉시 폐기용으로 표시된 폐기용기에 담아 색소와 섞어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실금란은 정상란과 달리 견고하지 못해 쉽게 난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소비 자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신속하게 공급
 - 계란을 농장에서 수집하여 포장·표시하기 전에 반드시 선별과정을 거쳐 유통 할 수 없는 알을 제거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수집하는 계란이 휴약기간을 준수한 닭에서 생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잔류위반 계란 유통 방지
 - 난각의 최종 표시 의무와 책임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임
 - 계란과 관련 없는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금지 (사실과 다른 사육환경, 사육방법 등)
 - 계란을 세척할 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즉시 건조하여 냉장으로 보관, 유통, 판매하고 포장에 '냉장보관'을 반드시 표시
 - * 세척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냉소(0 ~ 15℃)에 보관 권장

포장육 안전 관리

• 영업장 위생관리 점검

- 원료의 건전성, 가공전 원료 취급상태, 가공 작업장의 청결유지, 주기적 소독상태, 가공작업실 실내온도 적정 유지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

• 중점 점검 사항

-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 원료의 구비요건을 위반하여 부적정 원료 사용 행위 :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제품을 보관하였다가 재포장하는 행위
- 작업실(15℃ 이하), 원료육보관실(냉장 0~10℃이하, 냉동 -18℃이하), 제품 보관실(냉장 0~10℃이하, 냉동 -18℃이하)
- 식육제품의 등급 및 인증(할랄, 안전관리인증기준) 등 허위표시, 광고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관련 허위·초과표시(미표시 행위 포함)
- 폐기대상 축산물의 부적정 보관 행위(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운용행위

• 제품표시사항 관리 :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등

'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내용 #2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기본 방향

- 취약분야를 선별하여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식품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
-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신고 식품 판매 행위 점검
- 시기별 다소비식품, 집단급식용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및 지역별 특산식품 등 유통·판매 업체 관리 강화
- 특이사항
 - 무허가(무신고)제품, 무표시 제품, 표백제 및 황산알루미늄 처리,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 등 첨가 위해제품, 무신고 소분제품 및 유통기한 변조제품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행위자 적발 후 형사고발 조치
 -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 또는 함량을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에 불시 출장하여 원료구입 및 제조공정 등 전반에 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행정제재 조치

허위·과대광고 관리

- 인터넷, 방송(지역케이블방송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제품, 민원신고 제품, 불법 유통 제품 등 중점 모니터링
 - '17년 주요 이슈 품목 : 유황(보스웰리아), 톳 환, 석창포, 백수오,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판매제품,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식품을 '영유아 식품'으로 표방, 한약재 처방명칭사용 제품 등
- 방송, 인터넷, 신문(무가지 포함) 등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허위과대광고 행위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 처벌 강화

유형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제1항제1호~) 위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입금지(제75조) ○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제9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입금지 또는 품목제조금지(제75조, 제76조) ○ 과징금(제83조) ○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소액가액의 4~10배 벌금(제94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제95조)

식품 등 수거·검사

-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위해항목 중심으로 수거·검사 강화
 - 가정간편식, 배달앱 조리식품, 온라인 판매식품 등 소비자 관심 식품 수거검사 강화
 - 유통 벌꿀 중 항생제, 단순처리 농산물로 제조된 다류 중 잔류농약 등 위해우려 항
- 도매·전통시장·국도변 슈퍼 등 유통식품, 대형 식품 판매점·백화점·PB(자체브랜드)제품,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판매제품 등 수거검사 강화
 - 백수오 분말·환 제품은 전국 약령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등
- 국내 제조·가공식품 중 농·축·수산물 원료 함량이 높은 식품의 입고된 원료에 대한 위해우려 성분 검사 강화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의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검사 강화
- 유통 벌꿀 항생제 등 위해우려 성분 수거·검사
 - 국내 제조·소분 벌꿀, 단순처리농산물로 제조된 다류 등
 - 검사항목 : 항생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 전년도('16.10~'17.9) 회수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동일 품목류 출고 전 제품
 - 회수 사유가 된 부적합 항목
-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배달앱(도시락, 족발 등), 온라인(건강표방제품 분말·환 등)
 - 검사항목 : 유형별 개별 규격(공통규격 포함), 식중독균 등
- 냉면, 콩국수 등 하절기 다소비 조리식품, 봄·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조리식품 등
 - 검사항목 : 대장균, 식중독균 등
- 카페인 함유원료(녹차, 홍차, 과라나, 커피원두, 코코아콩, 콜라나무열매 등)를 사용하여 제조한 음료류, 커피(액상), 다류 등 액체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카페인을 첨가한 탄산음료
 - 검사항목 : 카페인
 - 함량 검사결과 0.015% 초과한 경우 부적합 조치

'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내용 #2

수입식품 등의 수거.검사

기본 방향

- 부적합 이력이 없어 장기간 서류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품목과 해외의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를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등과 최근 4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운영
- 위생취약지역인 도매시장, 전통시장, 국도변 슈퍼 등 유통 수입식품등 수거 검사 강화
- 수입식품 등 특별(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 유통단계에서 최근 4년간 부적합품목 및 항목
 - 최근 3년간 사용금지 물질 검출로 부적합 된 품목
 - 중점 검사항목: 최근 '14~'17.9.부적합 품목 및 항목
- 허위 과대광고 관리
 -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인터넷(포털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개인판매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실시
 - 기획 모니터링(설.추석)시 TV 홈쇼핑 추가 모니터링

수입식품 업체 주요 점검 내용

- ① 불법 수입식품등 취급·판매행위
 -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등 판매행위 등
 - 수입식품등의 용도(불법판매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용 등)의 판매여부
- ②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등
 -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 : 질병치료 표방 허위·과대광고 식품은 관련 위해성분 함유 여부 수거검사 실시
- ③ 유통관리 적정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행위
 - 부패·변질식품 보관행위
 - 냉장·냉동제품 등의 적정 보존·보관·운반·진열·판매여부(온도계 등 활용)
- ④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 지속관리
 - 신맛 캔디 주의문구표시, 식품첨가물 아산화질소의 흡입용도 판매행위 등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관리

제조.유통단계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농산물 조사 및 수거.검사 방법
 - 가급적 농산물 전문판매장, 직거래장터, 재래시장 등에서 실시
 - 원산지,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료구입처 등을 확인하여 추적·관리하고, 해당 원료는 간이 수거검사 실시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강조표시 및 유사 표시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조사 또는 수거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처분 등 조치
-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점 관리 대상
 - 유전자변형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표시관리대상 원료의 사용빈도가 높은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등) 제조·가공업체 등 : 품목제조보고상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관리대상 원료사용이 많은 업체 등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유통관리대상 식품으로 통보받은 자사제조용 원료(유전자변형) 사용업체
 - 집단급식소(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표시 및 유사 표시를 제품이거나 업체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표시 및 유사 표시를 제품 적정성 여부 확인
- ①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
 - ② 표시대상인 제품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미표시된 경우
 - 증명서류 미비치(미구비) : 표시보완 및 행정처분
 - 증명서류 미비(허위표시 여부, 진위확인 등) : 반드시 수거.검사를 실시, GM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GM 성분이 검출될 경우는 원료확보시 정량검사 실시. 함량 초과 시 관련법(식위법, LMO법)에 따라 표시삭제 및 행정처분, 폐기 또는 반송
 - ③ Non-GMO 표시 또는 유사표시가 있는 경우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 증명서류 확인 :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후 종결. 미입증시 강조표시 삭제 및 행정처분, 관련 법에 따른 고발조치
 - 증명서류 미비치(미구비) : 강조표시 삭제 및 행정처분, 관련 법에 따른 고발조치
 - 증명서류 미비(허위표시 여부, 진위확인 등) : 반드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GM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GM 성분이 검출될 경우 표시삭제 및 행정처분
 - ④ Non-GMO 유사 표시
 - Non-GMO 표시방법 이외 표시는 모두 삭제 및 행정처분